

1. 개정이유

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식품산업진흥법」(법률 제16985호, ‘20.2.11. 공포, ‘20.8.12.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,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의 종류, 방법 등을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종류 신설
(안 제30조의2제1항)

- 1) 정기 조사 등(매년), 수시 조사 등(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)으로 규정

나. 사후관리 방법 신설(안 제30조의2제2항)

- 1) 현장·서류·인증품에 대하여 방문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

다. 사후관리 계획 수립 규정 신설(안 제30조의2제3항)

- 1)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매년 조사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

라. 사후관리 결과 보고 규정 신설(안 제30조의2제4항)

- 1)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조사 등의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

마. 사후관리(조사대상 및 조사시기 등) 세부사항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(안 제30조의2제5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

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0조의2(사후관리의 종류 및 방법 등) ①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·열람·수거 또는 점검(이하 “조사등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.

1. 매년 실시하는 정기 조사등

2.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 조사등

② 제1항에 따른 조사등은 현장·서류·인증품에 대하여 실시하고, 방문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
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등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등의 결과를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대상, 시기 등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0조의2(사후관리의 종류 및 방법 등) ①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·열람·수거 또는 점검(이하 “조사등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.</u> <u>1. 매년 실시하는 정기 조사등</u> <u>2.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 조사등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조사등은 현장·서류·인증품에 대하여 실시하고, 방문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</u> <u>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등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u> <u>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등의 결과를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u> <u>⑤ 대상, 시기 등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</u>